

통합디자인학과 대학원 내규(28차 개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합디자인학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학과내규로 정한다.

1. 입학자격 및 취득학점 관련 사항

입학 자격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비고
대학원 내규에 따른				제3차 개정: 동일계전공 졸업생 단서조항 삭제함.
취득 학점	<p>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24학점은 본 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나머지 6학점은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p> <p>석사 학위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선택 교과목 추가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p>	<p>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총 취득학점 중 본 학과의 개설과목을 49학점이상 취득해야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타 학과 개설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p>	<p>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3학점으로 하며, 그 중 본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해야한다. 통합과목 및 선택과목 중 12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 개설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p>	<p>제3차 개정: 박사학위과정 수료 학점을 최저30학점으로 변경함- 대학원학칙 및 내규 2006년 9월 개정학칙(제5장 15조 제1항)에 따른(2006.10).</p> <p>제6차 개정: 박사과정 필수과목 (통합디자인연구) 신설에 따라 박사과정 수료 최저학점을 33학점으로 조정 (2010. 8. 31).</p> <p>제14차 개정: 통합디자인 기획, 통합디자인전시기획을 통합하여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를 개설, 석사, 통합과정 수료 최저학점을 각각 29학점, 53학점으로 조정.</p> <p>제15차 개정: 졸업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을 석사과정 30학점, 통합과정 54학점으로 조정.</p> <p>제17차 개정: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취득학점 조항 추가 (2019.09.30).</p> <p>제18차 개정: 타학과 개설과목 취득 승인 조항 수정(2019.11.25).</p>
학점 이수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필수 과목	연구방법론1과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연구방법론1 또는 연구방법론2,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석), 통합디자인 연구(박)를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연구방법론1 또는 연구방법론2와 (석사취득학점 제외), 통합디자인연구를 필수로 한다.	
보충 과목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 영역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보충과목은 본 학과 개설과목(학부)으로, 최대 12학점이며 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사과정 내규에 따른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영역 이외의 석사학위 소지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소지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33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최대 12학점 이수 한다. 절차는 석사과정 내규와 동일함.	<p>제1차 개정(2003. 9.24): 석사 타 전공생의 보충과목 단서 항목 추가.</p> <p>제3차 개정: 박사과정의 타 전공보충 과목 조항 추가함.</p> <p>제5차 개정: 조기졸업을 위한 보충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하고 '최대'문구 삽입함.</p>

	보충과목 이수 계획서는 입학 학기(3월, 9월)에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교수회의에서 이를 최종 검토한다.			제13차 개정: 타전공생의 보충과목 이수 조항과 보충과목 조항을 합침, 조기 졸업자의 보충과목 면제 내용 삭제.
--	--	--	--	--

2. 수료자격요건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비고
신청일시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		제3차 개정사항 (누락)(2006.10.31.): 3월 초와 9월초에서 날짜 변경.
수료자격	<p>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아래 3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단,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플 500점, CBT 173점, IBT 61점, 토익 700점, 텁스 600점, IELTS 5.5, 토픽 5급 이상의 외국어, 한국어 성적 2. 2편 이상의 학술대회발표 논문 또는 전시, 공모전 수상 실적(단, 학술대회발표논문 주저자 1편 이상 포함, 학술대회발표논문은 등재학술지논문 기재로 대체 가능) 3. 국내 등재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학술지 1편 게재 	<p>정규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54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아래의 1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단,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성적 및 연구실적은 박사과정 내규에 따름 	<p>정규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33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아래의 3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단,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플 500점, CBT 173점, IBT 61점, 토익 700점, 텁스 600점, IELTS 5.5, 토픽 5급 이상의 외국어, 한국어 성적 2. 2편 이상의 학술대회발표 논문 또는 전시, 공모전 수상 실적(단, 학술대회발표논문 주저자 1편 이상 포함, 학술대회발표논문은 등재학술지논문 기재로 대체 가능) 3. 국제2등급 이상 학술지 1편(주저자 기준) 및 국내 등재 학술지 1편 게재(국제2등급 학술지 1편은 국내 등재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 	<p>제2차 개정사항(2006.4.26): 응시자격 2번 조항 추가. 제3차 개정: 박사응시자격 21학점 취득자로 변경~대학원학칙 및 내규 2006년 9월 개정학칙(제5장 15조 제1항)에 따름. 제5차 개정: 응시자격 2번 조항을 2, 3번으로 나눔. 제12차 개정: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대체 인정하는 내용 추가. 제13차 개정: IBT 추가. 제14차 개정: 필수과목 조정으로 인해 석사, 통합과정 응시 가능한 최저학점 조정. 제16차 개정: 박사 종합시험응시자격 변경. 제18차 개정: 종합시험 폐지 및 수료 신청 요건 추가(2019.11.25.). 제20차 개정: 박사과정 주저자 요건 변경. 제24차 개정: 석/박사과정 학술대회발표논문 및 국내 등재 학술지 주저자 요건 변경. 제25차 개정: 석/박사과정 어학점수 기준 추가. 제26차 개정: 석사과정 국내 등재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도 인정함을 추가. 제27차 개정: 25차 내규에 맞춰 1항의 텁스 점수 추가, 석사과정 3항의 주저자 기준 삭제함. 제3차 개정 사항: 성적증명서 제출 추가. 제3차 개정(누락)(2006.10.31.): 외국어시험면제자도 종합시험 응시신청 시</p>
수료신청	수료신청자는 외국어시험성적표와 연구실적 사본 및 신청원서, 성적증명서를 학과로 제출한다.	석사과정 내규에 따름	석사과정 내규에 따름 단, 본 학과 석사졸업자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영어시험	

	또한 입학 시 외국어시험면제자는 수료신청 시 외국어시험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을 합격하였으므로 박사과정 입학 및 졸업시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수료신청을 위한 영어시험 대체 자격조건을 교수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기로 변경함. 제10차 개정(2013. 4. 2): 본교 석사 출신자 및 경력자 영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내용 추가. 제17차 개정(2019. 09. 30.): 영어시험 대체 자격 조건 문구 변경. 제18차 개정: 종합시험 폐지로 인한 문구 변경 (2019.11.25.). 제26차 개정: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 시 외국어 시험 합격자도 외국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석사과정).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면제 대상 범위를 변경함 (박사과정).
--	---	--	--

3. 논문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비고
심사 위원 구성		대학원 내규에 따름		
심사 과정 및 자격	<p>학위논문 예심 이전에 논문 내용으로 공개발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평균 B등급 미만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심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는 공개발표심사에 참여는 하되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p> <p>학위논문 본심 이전에 연구 결과를 국내 등재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주저자 기준, 수료 신청 시 제출한 논문 실적과 중복 불가).</p> <p><u>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은 시행세칙 4항에 따른다.</u></p> <p>논문의 예심과 본심은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p>	<p>박사과정 내규에 따름.</p>	<p>학위논문 예심 이전에 논문 내용으로 공개발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평균 B등급 미만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심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p> <p>학위논문 본심 이전에 연구 결과를 국제 1등급 또는 국제 2등급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주저자 기준, 수료 신청 시 제출한 논문과 실적 중복 불가).</p> <p>논문의 예심과 본심은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p>	<p>제 9차 개정사항: 연구결과 학술지 게재 필수 추가(2012.10.29).</p> <p>제14차 개정: 석사, 석박 통합과정 논문 주제 전시 필수 삭제.</p> <p>제16차 개정 :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의 논문 심사 자격 기준 추가.</p> <p>제17차 개정(2019. 09. 30.): 석사 논문 대체 기준 추가.</p> <p>제18차 개정: 종합시험 폐지 및 수료 신청 요건 추가로 인한 문구 변경 (2019.11.25.)</p> <p>제19차 개정: 공개발표 일정 변경 및 심사 추가 (2020.6.22.)</p> <p>제27차 개정: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의 공개발표 심사 참여를 명시하고 대체실적 기준을 수정함. 시행세칙 4항도 동일하게 수정함.</p>

4. 겸임교수 선발기준

제16차 개정 : 겸임교수 선발 학과 기준 삭제, 본부 규정에 따른다.

부칙 :

※ 개정된 내규는 개정된 다음 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함.

통합디자인학과 대학원 내규 제정(1999년)

개정차수	개정일	개정내용
제1차	2003-9-24	
제2차	2006-4-24	
제3차	2006-10-31	
제4차	2008-10-14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함.
제5차	2008-11-11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
제6차	2010-8-31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석사과정 통합디자인기획, 통합디자인전시기획 과목으로 분리하여 따른 석사과정 수강은 현 3학기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함) 박사학위과정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이 33학점으로 조정됨.
제7차	2011-5-3	겸임교수 항목 (4) 추가.
제8차	2011-10-10	석·박사연계과정 항목 추가, 문구 정리.
제9차	2012-10-29	논문결과 학술지 게재필수 항목 추가, 2013년 1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시행.
제10차	2013-4-8	전공영역삭제. 입학자격 및 취득학점 관련 사항의 보충과목 내용 수정 본교 석사 출신자 및 경력자 영어시험 점수 제출면제 내용 추가.
제11차	2015-6-26	석사응시자격 및 필수교과목 관련 사항 내용 수정.
제12차	2016-5-16	외국인 재학생 종합시험 응시자격 관련 내용 추가.
제13차	2016-9-26	타전공생의 보충과목 관련 내용 정리, IBT점수 추가.
제14차	2017-3-20	통합디자인기획, 통합디자인전시기획 폐강, 통합디자인기획 프로젝트(필수과목)으로 신규 개설함에 따라 관련된 필수 과목 이수 내용 수정.
제15차	2017-12-11	졸업을 위한 최소학점을 석사과정 30학점, 통합과정 54학점으로 수정.
제16차	2018-9-3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논문 심사과정 및 자격 요건 변경. 2019년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시행.
제17차	2019-9-30	융합전공 개설에 따른 이수 내용 반영.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조건 추가.
제18차	2019-11-25	종합시험 폐지에 따른 수료 조건 추가 및 박사과정 타 학과 취득 학점 요건 변경. 202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시행. 이전 입학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 개정 내규의 적용 가능.
제19차	2020-2-10	시행세칙에 박사과정의 연구방법론2 과목 대체인정 내규 추가. 공통교과목과 통합교과목 통합 및 융합전공 이수내용 변경. 희망자에 한해 소급 적용함.
제20차	2020-6-22	공개발표 일정 변경 및 심사 추가. 2020년 2학기 논문 심사자부터 소급 적용함. 박사과정 수료자격 요건 주저자 기준 변경.
제21차	2021-3-8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세칙 추가.
제22차	2021-6-14	융합전공 승인 내용 변경.
제23차	2021-12-6	교과목종별 확인 내용 및 학술대회발표논문 대체 가능 항목 추가.
제24차	2022-09-19	석/박사 과정 수료요건 변경. 2022년 2학기 수료 심사자부터 소급 적용함.
제25차	2023-01-20	석/박사 과정 어학점수 기준 추가.
제26차	2023-07-05	석/박사 과정 수료 자격 및 신청 기준 수정.
제27차	2023-10-05	25차 내규에 맞춰 석/박사 과정 수료 자격요건과 외국어 성적 기준을 수정.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의 심사과정 및 자격 요건을 수정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4항을 수정.
제28차	2024-3-11	석사 및 박사세미나 과목의 이수 요건을 삭제하고 소급 적용함.

시행 세칙 :

1. 학점이수

재학생의 학점이수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아래의 표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과정표에 표기된 교과목종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석사과정	석사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소30학점 중 필수교과목 6학점, 통합교과목9학점, 선택교과목12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단,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6학점 이수).		
종별	학점	교과목	비고
필수 교과목	3	연구방법론1	
	3	통합디자인 기획과 프로젝트	
통합 교과목	9	9학점 이수한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9학점 - 타 세부전공 최소3학점 - 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6학점 이수. 	
석·박사 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54학점 중 필수교과목 9학점, 통합교과목15학점, 선택교과목 21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단,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종별	학점	교과목	비고
필수 교과목	3	연구방법론1 또는 연구방법론2	연구방법론 1 or 2를 지도교수 상의 하에 정함.
	3	통합디자인 기획과 프로젝트	석사과목
	3	통합디자인연구	박사과목
통합 교과목	15	15학점 이상 이수	
선택 교과목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15학점 - 타 세부전공 최소6학점 	
박사과정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33학점 중 필수교과목 6학점, 통합교과목 9학점, 선택교과목 15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단,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종별	학점	교과목	비고
필수 교과목	3	연구방법론1 또는 연구방법론2	<p>석사과정에서 연구방법론1을 기수강한 경우, 연구방법론2를 필수로 인정함. 연구방법론2를 본 학과에서 이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타 전공에서 개설된 질적연구방법을 이수하면 본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함.</p>
	3	통합디자인연구	
통합 교과목	9	9학점 이상 이수한다.	
선택 교과목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9학점 - 타 세부전공 최소6학점 	

2. 융합전공 운영 세칙

- 융합전공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융합전공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융합전공 내규 3장을 따른다.

3. 보충과목 이수

타 전공 입학자 (미술/디자인계열 전공 외/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포함)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입학 첫 학기 수강신청 전에 보충과목 인정원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의 이수는 교과목 이수와 합하여 한 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보충과목 종별은 “보충” 또는 “청강”으로 신청한다.
- “보충”으로 신청한 과목은 성적은 평가되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 합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30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청강”으로 신청한 과목은 “P” 또는 “NP”로 평가되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보충과목의 이수는 졸업사정 시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학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의 인정원은 입학하는 첫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가 정하는 양식(보충과목 이수 계획서)에 기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의 이수 계획서는 “[통합디자인학과 내규 시행세칙 1항](#)”에 근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 검토한다.
- 보충과목 중 학부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입력 불가능하므로 수강변경 기간에 대학원교학처에서 별도양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운영내규(21.1.20)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로 운영된다.

- 적용대상 : 2018년 3월 이후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 : 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자격요건(외국어시험 성적제출, 석사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하려는자. (단, 8학기 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기한 내까지 대체실적 심사를 신청해야하고, 대체실적 미승인시 학기연장 불가)
- 대체실적 승인 필수요건:

구분	항목
필수요건 1	전공 선택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 3.0 이상
필수요건 2	연구계획서의 주제에 준하는 주제로 국제 2등급 이상 학술지 1편 게재 (주저자 기준)

- 석사학위 대체실적 신청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기간 내에 석사학위 대체실적 대상자로 신청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신청자격을 검토 받음.
- 심사대상자 승인 후, 논문 대체실적을 매학기 본심심사결과 등록일까지 제출하고 심사 신청을 함.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대체실적을 심사/판정하고, 학기말 성적등재 후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대체 실적물을 학사포털에 입력함. 심사결과 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함. 대체실적 심사관련 제반 문서는 학과의 UDESC문서철에 보관함.
-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는 공개발표심사에 참여는 하되 평가를 받지는 않음.